

속초 동명 휴티스 오션시티

기관 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I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306-10번지 일원
- 규 모 : 총 90세대 중 기관추천 8세대(지하1층~지상20층 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시 행 사 : 교보자산신탁(주), 시공사 : 금강종합건설(주), 위탁자 : (주)동명주택개발
- 일정계획(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2021. 09. 02.(목)	신문공고 및 홈페이지(https://www.hutisoceancity.com)
• 사이버 견본주택 개관	2021. 09. 03.(금)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466-17번지
• 접수일자	2021. 09. 13.(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1. 09. 24.(금)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계약기간	2021. 10. 05.(화) ~ 07(목)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계약

※ 위 일정은 업무 추진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II 특별공급자격

■ 특별공급 공통사항[기관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장기복무 군인)]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구 분	내 용
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 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일반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속초시 및 강원도 거주자에 한해 신청 가능함.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애인 : 강원도청 경로장애인과 ②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 강원 동부 보훈지청 복지팀 ④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 강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 영동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기관별 순위 선정시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약 예치금액

구분	서울특별시	그 밖의 광역시	속초시 및 강원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 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4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순번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될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III

신청시 구비서류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시

해당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신청서 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청약통장가입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은행 (중소기업근로자, 군인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세대주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신청시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제출,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제출
인감증명서	· 특별공급 신청용 1통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날인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	비 고
위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신청자 인감증명서	· 특별공급 신청 위임용 1통
신청자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날인
대리신청자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IV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가 신청일(2021. 09. 13(월)예정)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신청 접수하지 않을 경우 대상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다.

- 임대조건, 임차권 양도, 전대금지,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1. 09. 02(목)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 홍보물 및 사이버 견본주택(<https://www.hutisoceancity.com>)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9. 02.(예정) 현재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V

속초 동명 휴티스 오션시티 특별공급 배정세대 및 추천양식

■ 특별공급 배정세대수 총 8세대(총 90세대 기준)

구 분	내 용	59A	59B	59C	59D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1	-	1	-
	국가유공자	-	1	-	-
	장기복무제대군인	-	-	-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	1	-
	중소기업근로자	1	-	-	1

■ 추천명단

타입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계				

■ 조감도



- 현장주소 :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306-10번지 일원
- 견본주택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204
- 문의전화 : 1600-5391
- 홈페이지 : <https://www.hutisoceancity.com>

